

석천로52번길, 장말로188번길, 원미로155번길,
부천로66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(긴급) 행정예고

부천시 석천로52번길, 장말로188번길, 원미로155번길, 부천로66번길 일원 등 4개소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년 9월 12일

부 천 시 장

1. 행정예고명 : 석천로52번길, 장말로188번길, 원미로155번길, 부천로66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(긴급)

2. 취지 및 목적

- 「주차장법」 제7조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에 따라 안전문제 발생우려관련하여 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폐지대상 : 총 8면

연번	주차장 구역	위치	면수	비고
1	원미구 석천로52번길	부천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23 (상동 32-28) 일원	2면	

연번	주차장 구역	위치	면수	비고
2	원미구 장말로188번길	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88번길 22 (상동 232-37) 일원	2면	
3	원미로 원미로155번길	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55번길 5, 37-1 (원미동 53-3, 원미동 58-1) 일원	3면	
4	원미구 부천로66번길	부천시 원미구 부천로402번길 11 (심곡동 156-1) 일원	1면	

4. 공고방법 :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, 게시판

5. 관련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주차장법 제7조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
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. 9. 12. ~ 2024. 9. 23.(11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행정예고(공고)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한 : 2024. 9. 23.(월)까지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- 제출방법

1) 우 편 :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)

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

2) 전 화 : 032) 625-4772 3) 팩 스 : 032) 625-4759

소관부서	주차정책과	담당자 직·성명	주무관 권용환	전화번호	(032)625-4772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